

200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(안)

의안번호	
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5. 2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사유

- 구미 출신 한말 의병장 왕산 허위 선생을 재조명하고 기념하는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
- 왕산 허위 선생 후손의 기념공원 부지 기부채납을 수용하여 기념공원을 조성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[취득재산]

○ 기부채납 재산

(왕산 허위선생 기념공원 부지)

• 기부물건 : 대지 3필지 1,990m²(601평)

구미시 임은동 266번지 1,462m²

구미시 임은동 266-1번지 474m²

구미시 임은동 262-2번지 54m²

• 추정가격 : 373,364천원(공시지가 기준)

3. 근거법령

- 지방자치법 제35조
- 지방재정법 제75조 및 제77조,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4조
-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및 제41조

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

회계명: 일반회계

(단 위 : 천 원, m²)

[illegible]

2005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

회계명: 일반회계

(단 위 : 천 원, m²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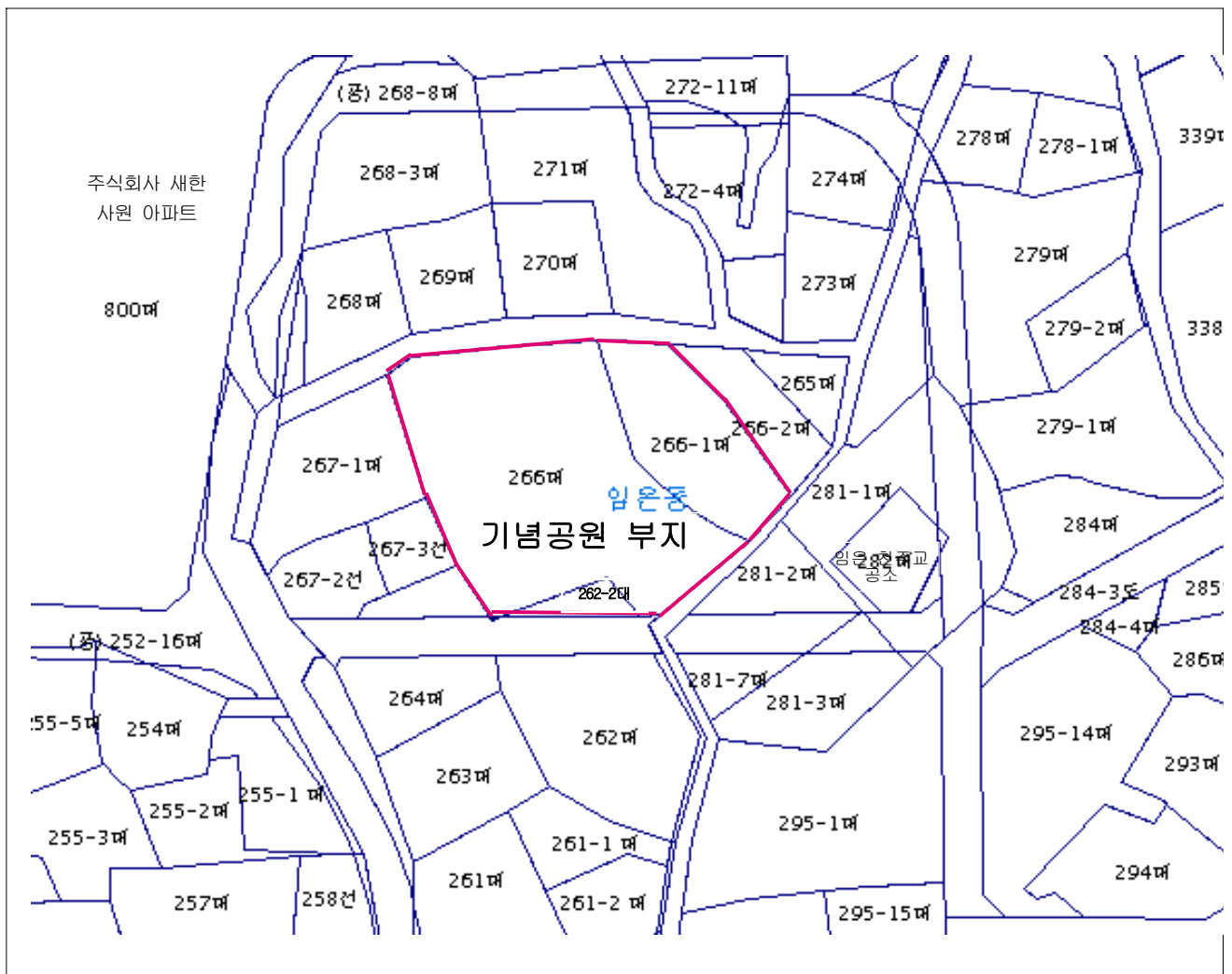
[illegible]

취 득 (기부채납)대 상 토 지

□ 재산의 표시 : 3필지 1,990㎡(601평)

- ▶ 구미시 임은동 266번지 지목 : 대지 면적 : 1,462㎡
- ▶ 구미시 임은동 266-1번지 지목 : 대지 면적 : 474㎡
- ▶ 구미시 임은동 262-2번지 지목 : 대지 면적 : 54㎡

□ 위 치 도



【 관 계 법 령 】

□ 지방자치법 제35조(지방의회 의결 사항)

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1. ~ 5. <생략>
6.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

□ 지방재정법 제75조(기부채납)

①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채납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위반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채납하여서는 아니된다.

□ 지방재정법 제 7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
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“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당해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②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계획의 작성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2조(기부채납)

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5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채납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 기부서와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.

1. 물건의 표시
2. 기부자의 성명·주소 또는 상호
3. 기부의 목적
4. 가격
5. 도면

- ②대표자에 의해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각 기부자의 성명·주소 및 기부재산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.
- ③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자가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재산의 사용기간중 당해 기부재산을 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부서에 전대사업계획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.

□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
- ①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.
- 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으로 한다.
 1.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),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2억원이상),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하고,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
 2.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 제곱미터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이상),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 제곱미터 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 제곱미터 이상)

□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(공유재산관리계획)

- 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하기전까지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②<삭제 1995.11.15>

③<삭제 1995.11.15>

④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.

다만,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 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

□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41조(기부채납원칙)

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의 행정목적
사용에 충실하여야 한다.